

2012. 5. 31.(목) 10:00

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(제4차 본 회의)

#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총 무 위 원 회

## 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----- 2
2.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----- 5
3.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8
4.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 12
5.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----- 15

# 〔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〕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2. 05. 17.
- 나. 제출자 : 안철우·강철우·조선제·류영수·이애숙
- 다. 회부일자 : 2012. 05. 1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5. 25
- 마. 의안번호 : 제2012 - 29호

### 2. 제정이유

-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주요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
- 라.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 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규정을 둠(안 제9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이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

##### 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**안 제1조**에서는 제정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
- **안 제2조**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
- **안 제3조**에서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- **안 제5조**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(노력) 규정
- **안 제6조**에서는 주요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**안 제7조**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

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

- **안 제8조**에서는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이해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는 성실하게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
- **안 제9조**에서는 협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함.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군정 주요정책이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
○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2. 05. 17.
- 나. 제출자 : 강철우·강창남·류영수·김재권
- 다. 회부일자 : 2012. 05. 1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05. 25
- 마. 의안번호 : 제2012 - 30호

### 2. 제정이유

-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  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
- 다. 출산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원금을 규정함(안 제4조)
  - 장애등급 1~2급(150만원), 3~4급(100만원), 5~6급(70만원)
  -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

- 라.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·면장에게 신청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  - 읍·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
- 마. 출산지원금 지급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)
  - 읍·면장은 신생아의 신고사항,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
- 바.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통해 장애인 산모와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
  - **그 주요내용을 보면**
    - **안 제1조**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
    - **안 제2조**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
    - **안 제3조**에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,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규정.
    - **안 제4조**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원 금액으로 장애등급 1~2급(150만원), 3~4급(100만원), 5~6급(70만원)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규정함.

- **안 제5조**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절차로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·면장에게 하며 읍·면장은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조치  
⇒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하도록 규정
  - **안 제6조**에서는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신고사항,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
  - **안 제7조**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
  - **안 제8조**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접수대장 및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함
- 이 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2. 05. 1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2. 05. 1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05. 25
- 마. 의안번호 : 제2012 - 32호

## 2. 개정이유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며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함  
(안 제5조 제1,2,4항)
  - 임용시험 시행기관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
  -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(임용

- 시험방법), 제45조(임용시험의 단계), 제48조(시험위원)를 준용
- 나.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함 (안 제5조 3항)
- 별정직공무원의 상위 직위 결원 발생 시 하위 직위 현직자를 임용시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생략
  -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
- 다.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(안 제5조의2)
-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 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
- 라. 직권면직 사유 중 “신체·정신상의 장애” 삭제(안 제10조)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“신체·정신상의 장애” 사유를 삭제
- 마.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 개선 (안 제11조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·소재불명·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
  -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명확하게 하고

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

## 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**안 제5조**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를 명시 하고 있으며
  - 임용시험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5급상당 이상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  -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공고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
    - 별정직공무원의 상위 직위 결원발생 시 하위 직위 현직자를 임용 시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생략
    -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
  -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,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,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도록 규정함
- **안 제5조의2**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
- **안 제10조**에서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장애인차별 조항인 “신체·정신상의 장애” 사유를 삭제
- **안 제11조**에서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

인력충원 방법으로

- 질병·소재불명·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
-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 보완
  
-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 범위를 확대하며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
  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[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]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2. 05. 17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2. 05. 1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05. 25
- 마. 의안번호 : 제2012 - 33호

### 2. 개정이유

- 2012년 경상남도 출산지원 시책사업 중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증액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, 저 출산 극복의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증액 지원(안 제5조 6호)
  - 20만원 ⇒ 50만원(30만원 증액)
- 나. 출생장려지원대상 자격 변경 (안 제6조 제3항)
  - 태아 건강보험 대상자 : 임신확인일 기준
- 다. 출생장려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변경 (안 제8조)
  -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군수에게 제출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경상남도 출산지원시책사업 지침에 의거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
  - **그 주요내용을 보면**
    - **안 제5조**에서는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토록 하였으며
      - ⇒ 둘째이상 모두 50만원 지급
    - **안 제6조**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으로
      - 출산장려금 : 신생아 출생일 기준
      -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
        - 태아 건강보험 : 임신확인일
        - 출생아 건강보험 : 신생아 출생일    - ⇒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
  - **안 제8조**에서는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토록 규정
- 이 개정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 이상에 대해 증액 지원하고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[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(안) ]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2. 05. 1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2. 05. 1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05. 25
- 마. 의안번호 : 제2012 - 34

### 2. 변경이유

-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단체 회관을 복합건물로 신축 예정이었으나 여건변화로 분리 추진코자 근로사업장으로 변경
  - 2010년 12월 16일 제17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

### 3. 주요내용

#### ■ 재산의 표시

#### ○ 당 초

(단위:㎡, 천원)

구분	재산종별	재 산 의 표 시			기 준 가 격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재 산 소유자
		소 재 지	지목	면적				
취득	토지	거창읍 대동리 311-1	과수원	2,560	99,584	2012	장애인근로 사업장 시설 신축	이옥남

## ○ 변 경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구분	재산종별	재산의 표시			기준가	취득시기	취득사유	재산소유자
		소재지	지목	면적				
취득	토지	일반산업단지 내 8블록 3로트	공장 용지	3,312	300,000	2012	장애인근로 사업장 시설 신축	(주)거창 산업단지 김영현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**장애인직업재활시설(근로사업장) 신축부지 매입안**은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거창일반산업단지(8블록 3로트)내에 부지 6,600m<sup>2</sup>, 건축연면적 1,500m<sup>2</sup> 정도 규모의 박스 등 제품 생산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(근로사업장)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
  - 2010년 12월 : 제17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
  - 2011년 12월 : 도비 확보 및 사업비 명시이월
  - ⇒ 사업비 : 1,941,328천원(국595,264 도297,632 군1,048,432)
  - 2012. 5. 17 : 의회 주례회의 보고
- 시설의 성격과 용도,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단체 회관과 근로사업장은 분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